

	<h2>성과수당지급규정</h2>	규정번호	3-2-6
		제정일자	2018.06.19.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의 성과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교직원에게 적용하며 성과수당과 관련한 법령, 학교법인 새빛학원 정관, 학칙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수당”이라 함은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 재정지원사업의 수주 및 각종 대학평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부서”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의 조직구분을 말하며, 임시조직(TFT)을 포함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직원, 조교 등을 말한다.

제4조(성과수당의 종류) 성과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성과수당 : 예산의 절감, 사업 및 업무의 성과, 제안·창안 등의 제도개선, 수입 증대 등 경영 개선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금액
2. 평가성과수당 : 교원업적평가, 직원근무평정, 부서성과평가, 학과성과평가, 팀성과평가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는 금액
3. 특별성과수당 : 각종 외부 사업 유치, 대학의 명예 선양, 외부 포상, 대학단위의 외부 평가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급 할 수 있는 금액

제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성과수당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교비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산학협력단 회계 등 독립회계에 편성된 성과수당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성과수당에 관한 심의) 성과수당에 관한 심의는 교무위원회에서 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수당 지급 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과수당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성과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성과수당의 지급기준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성과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성과수당 신청방법의 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② 평가성과수당 지급에 있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원 또는 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성과수당 대상자의 성과에 관한 사항
2. 성과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성과수당 지급액) 성과수당 지급액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공적에 의하여 이종으로 포상을 받는 부서 또는 교직원
2. 성과수당 지급 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를 받은 뒤 1년 이상 경과하지 않거나 교내·외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

제11조(주관부서) 성과수당의 예산편성 등 필요한 업무는 전략기획처에서 담당한다. 다만, 외부 포상 및 내부 표창규정에 의한 특별성과수당의 예산편성과 관련사항 등은 교원인사 및 직원인사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교무위원 및 성과수당 업무 담당자는 성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법령, 정관, 학칙,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